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시행 2026. 1. 26.] [기획예산처훈령 제46호, 2026. 1.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제4조(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제2장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
제5조(재정사업평가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1조(분과위원회)
제12조(실무조정회의)
제12조의2(실무조정위원회)
제13조(수당 등)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15조(대상사업의 유형)
제16조(총사업비의 정의)
제17조(신규 사업의 정의)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제19조(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제20조(면제사업)
제21조(예타면제 절차)
제22조(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제24조(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
제5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제25조(대상사업의 선정 원칙)
제26조(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제27조(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29조(정보화 사업의 사전검토)
제29조의2(복지・소득이전사업 시범사업 실시)
제30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
제31조(직권 선정)
제32조(대상사업 선정절차)
제33조(대상사업 선정기준)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제35조(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36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제37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감독)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제40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제7장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제41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내용)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제43조(경제성 분석)
제44조(정책성 분석)
제45조(지역균형발전 분석)
제46조(기술성 분석)
제47조(경제사회 환경 분석)
제48조(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제49조(비용-효과성 분석)
제50조(종합평가)
제51조(정책제언)
제8장 타당성재조사
제52조(타당성재조사)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제9장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활용
제54조삭 제
제55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제55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연계)
제56조(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제56조의2(재정사업 심층평가와의 연계)
제57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5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시행 2026. 1. 26.] [기획예산처훈령 제46호, 2026. 1. 26., 일부개정]

기획예산처(타당성심사과), 044-214-3315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38조의3, 제85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수행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결과의 제출
3.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4. 「국가재정법」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5. 「국가재정법」제38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6.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7. 「국가재정법」제38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결과에 관한 자료 공개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

제5조(재정사업평가위원회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기타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 소속하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조사 방법・수행과 결과에 관한 사항
2.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운영, 조사 수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도로・철도・공항・항만・수자원・정보화・기타 재정 등 각 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개정
4. 기타 사업평가 등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차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 및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이 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 산업, 재정, 사회기반시설, 환경,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교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재정사업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안건을 서면(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는 미리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 '사회・문화・산업 분과위원회', '사회복지・소득이전 분과위원회' 중 하나를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지정한 2명
2. 해당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책임연구원(이하 "PM"(Project Manager)이라 한다)을 포함한 연구진 3명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경제・사회・환경・안전 등의 민간 전문가 7명

④ 위원장은 원활한 종합평가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서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
2. 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이상 또는 전직 교수인 사람
3.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관련 분야에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기타 위원장이 제1호부터 5호까지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종합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1. 해당사업 PM이 사업개요, 수요 및 비용 검토 결과를 보고
2.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소속 관계자가 정책성 평가항목별 기대효과를 설명
3. 해당사업 PM이 제2호의 설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
4. 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관계자, PM간 질의・응답
5.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 실시.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분과위원회 위원의 종합평가 결과에 비일관성이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고 재평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분과위원회 위원은 종합평가서에 서명한 후 분과위원장에게 제출
7.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최종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회의를 종료

⑦ 분과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는 종합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하의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종합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⑩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종합평가결과, 분과위 논의사항 등 정책제언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2조(실무조정회의) 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에는 해당사업 관계부처, 기획예산처 실무자 및 PM 등이 참여한다.

③ 기획예산처는 해당사업 관계부처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무조정회의의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의2(실무조정위원회) ① 제12조에 따른 실무조정회의를 통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위원이 된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소속 하의 일반직 공무원
2. 해당 사업 PM
3.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명 이상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
2. 타당성재조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
3.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분석기준
4. 기타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 심의결과 및 회의록,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 및 회의록,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2. 「국가재정법」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하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15조(대상사업의 유형)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다만,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총사업비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융자사업비(국가 재정지원 규모 산정 시에는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도 포함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③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총사업비로 간주한다.

④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2. 정보화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등 구축기간에 소요되는 총비용

⑤ 민간투자사업 중 BTL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산정시 국가가 장래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아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신규 사업의 정의)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② 기타 재정사업은 사업의 지역・대상・수단 등이 기존 사업(완료사업 포함)과 현저히 달라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으로 본다.

③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②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제20조(면제사업)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예타면제'라 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 공공청사는 국가가 헌법,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과 그 대지, 특별법에 따라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도 포함한다(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도 준용하며,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의 경우 사무용 및 주차장 등 순수 청사시설이 전체시설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규정 별표에 따른 청사의 수급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의 성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다만, 국가유산 복원 외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군인복지기금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맺은 협약・조약 중 대통령의 재가 또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설물 및 시설물 운영 상 안전문제가 확인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식품 안전 문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식품안전기본법」제15조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한다.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제21조(예타면제 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제20조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①「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②「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안을 분석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10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안을 분석한다.

제24조(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부칙제3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에('99. 4. 9 이전)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비가 별도로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며 기본사업비・정책연구비・출연금 등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타당성조사는 제외한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09년 1월 현재 기본설계 등 이후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대상으로 한다.

③ 예타 제도 도입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시행계획(1996~2026)과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사업계획(1996~2026)에 포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동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09년 1월까지 설계가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제5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제25조(대상사업의 선정 원칙)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4회(분기별 1회)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 1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3조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1.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2.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특히, 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사업

3.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4. 사업의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5.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6.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면서 제39조 제3항의 신속예타절차를 함께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예타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예타절차 적용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7조(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 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안) :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국고 지원의 적합성
4.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정책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사업특화항목 등
6.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8.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수행 이력
9.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10. 신속예타절차 적용 필요성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② 그 밖에 사업유형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계획에의 반영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
2. 정보화사업 : 정보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시스템 구축의 범위, 정보시스템 활용계획 등
3. 기타 재정사업 : 사업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또는 지원률, 사업진행 절차 및 전달체계 등

제29조(정보화 사업의 사전검토)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분야별 검토・조정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요건 해당여부, 사업간 중복・연계성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에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전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2개 이상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의2(복지・소득이전사업 시범사업 실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범사업 수행 내역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수행 곤란 사유 등을 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실시 및 성과평가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1. 본사업 추진여부 결정의 시급성
2. 시범사업의 수행 가능성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경우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 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직권 선정)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대상사업 선정절차)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제출 등을 지연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사업 등의 검토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계속 검토할 수 있다.

제33조(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도로・철도부문 등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국토이용계획・지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진일정, 사업부지(건축사업) 또는 노선(도로・철도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 사업에 한함) 등의 구체화 여부
3. 사업 추진의 시급성 :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
4. 국고지원의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
5. 지역균형발전 요인 : 지역낙후도 수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6. 기술개발 필요성 : 관련 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제1항의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선정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
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
3. 기타 관계부처 회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요구된 사업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고, 법령 및 국가의 중장기 상위계획 등의 변경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실현가능성,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하나 조사 착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업계획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보완되지 않아 조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36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수행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감독)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지침, 분야별 표준지침 준수 여부
2.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 보관 및 공개 현황
3.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자료의 고의적 멸실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투명성・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의 구분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와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을 연구원 전공・연구 분야・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신속예타절차를 적용하는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연구진 선정 시 수의계약을 우선 고려한다.

⑤ 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을 경과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장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제12조의2에 규정된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분과위원회 자동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시급한 조사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철도부문 9개월)로 단축한다.(이하 "신속예타절차"라 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사착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 타법률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안전관리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
2.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3. 위원회에서 신속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으로 의결

제40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다수의 수행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할 때에는 수행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지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시점에 조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연구진에게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제41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② 정보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외에 기술성 분석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수상황지역".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는「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사업은 제외한다.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의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④ 해당 사업의 시행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 지역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방법을 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⑥ 조사 착수 후 경제성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사 지속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제12조의2에 규정된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쳐 제42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분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타당성 미확보'를 결과로 하여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제43조(경제성 분석) ①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②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③ 기타 재정사업 등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4조(정책성 분석) ①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사업 별도평가항목(선택) 등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조달위험성, 국가유산가치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별도평가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제45조(지역균형발전 분석) ①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② 제1항의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 중 지역낙후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제46조(기술성 분석) 기술성 분석은 업무요구 부합성, 적용기술 적합성,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분석한다.

제47조(경제사회 환경 분석) 경제사회 환경분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 경제사회 여건분석 : 경제규모, 복지제도 발전단계 등을 감안한 사업추진 적정성,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비교 등

2. 경제사회 영향분석 : 사업 추진을 통한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등
3. 재정의 지속가능성 :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미래 재정위험 초래 가능성 등
4. 그 밖에 경제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8조(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 문제인식과 정책목표 명확성, 정책우선순위 등
2. 수혜대상의 적절성 : 사업대상의 명확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수요 등
3. 추진방법의 적절성 : 급여 등의 형태・수준,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 기존정책과의 정책조합 등
4. 전달체계의 적절성 : 전달체계 명확성 및 효율성, 수요자 접근 용이성, 집행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가능성 등
5. 그 밖에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9조(비용-효과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 사업시행 효과의 구체성, 현실성, 명확성 등
2. 비용추정의 적정성 : 비용 산정의 적정성, 추가적 비용발생 가능성, 수요변동에 따른 비용변동 가능성 등
3. 비용-효과성 : 비용 대비 성과 추정의 적정성, 비용효과 측면에서의 대안 검토 등
4. 그 밖에 비용-효과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0조(종합평가) 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단, 별도평가항목이 적용되는 경우,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5%p(수도권 유형은 10%p) 각각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 건설사업(수도권 유형) :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2. 정보화 사업

・B/C 분석시 :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E/C 분석시 :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3. 기타 재정사업

・B/C 분석시 :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E/C 분석시 :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③ 정책성 평가 항목 중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별도평가항목의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1. 사업별도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 사업추진 여건 30~40%, 정책효과 60~70%
2. 사업별도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 사업추진 여건 20~30%, 정책효과 50~60%, 사업별도평가항목 20~30%

④ 사업별도평가항목 평가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이미 확보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대해 일괄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AHP를 활용하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량사업은 AHP와 도로 위험도 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추가로 판단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각 분석영역별로 100점 평가를 시행하여 영역별 평점 및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1. 3개 평가영역 모두 85점 이상이거나 종합평점이 255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 적정
2. 3개 평가영역 중 2개 이상 영역이 75점 미만이거나 종합평점이 225점 미만인 경우 : 사업 재기획 후 예타 재요구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경우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51조(정책제언)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 이외에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과 대안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한다.

②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의 특성, 향후 재정지출의 확대 가능성, 시범사업 및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 필요성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8장 타당성재조사

제52조(타당성재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50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타당성재조사 요건, 절차, 조사내용 등은 「국가재정법」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한다.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제50조제2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2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나, 「국가재정법」제50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도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장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활용

제54조 삭제

제55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완료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55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연계) 기획예산처장관은 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64조에서 규정하는 민자적격성 판단의 실시여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의2(재정사업 심층평가와의 연계)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가 제50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 사업에 대해 2년 이상 사업 시행 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계부처는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축적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2. 수요예측 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사업별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 및 사업 주요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을 감안하여,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국가재정법」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획예산처장관은 연구개발 및 재정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매2년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3.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46호,2026.1.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및 면제를 요구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4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
[별표 2]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민간투자기본계획 §64 ①항)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

1. 부처별 사업우선순위 총괄표

○ ○ ○부 · 처 · 청

(억원)

사 업 명[1]	분 야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n년도 예 산 요 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2. 분야별 요구서 제출양식

○ ○ ○ 분야

(억원)

사 업 명[1]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n년도 예 산 요 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3.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3-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건축 사업별 [붙임] 요청 자료를 함께 제출
※ 도로·철도의 경우 주변 도로·철도 노선(확정노선 및 향후 신설·확장사업 포함)을 반영한 사업 위치도 / 건축의 경우 사업계획을 반영한 위치도, 도면을 첨부

1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도로(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로, 특정지역 지원도로 등), 철도(일반·광역·도시철도 등), 공항, 항만, 수자원 등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등)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 -		
⑥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측정 산식: ○측정 방법: ※ 소관부처의 성과목표와 동 사업 성과목표·지표를 연계하여 기술 ※ 건설기간의 성과지표와 함께 완공 후 사업 시행 시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 기술		
⑦ 추진경위		○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 갈등·이견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술		
⑧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예정부지, 노선 등 - 사업대상지 정보(행정구역 및 지번 등 부동산정보) 포함 ○ 사업물량 : 연면적, ※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 규모 → 확장 규모 제시		
⑨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⑩ 재원조달방식		○ 지원형태 : 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 재원분담 : 국고, 지방비, 민자 등 구분 (사업유형에 따른 별도 분담기준(근거)이 있을 경우 제시) ○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⑪ 사업운영체계	○ 운영주체 : ex. (건축사업) 국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건립,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운영 ○ 운영방안 : ※ 운영내용, 운영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 ※ 완공 후 시설 운영 주체 및 방안, 재원조달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기술
⑫ 사전용역	○ 조사기관 : ○ 조사기간 : ○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⑬ 사업기대효과	○ B/C,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도로 분야일 경우 현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등급 제시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타 법령에 의한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기타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3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예시) <총사업비 구분(용도별)> (단위: 억원)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용도별 총사업비 구분과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5 정책 효과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되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① 일자리 효과	○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② 생활여건 영향	○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예시) 철도사업의 운행시간 관련 신뢰성 개선 및 열차 운행빈도 개선 효과, 정보화사업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 업무편의성 증가 등
③ 환경성 평가	○ 사업 수행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④ 안전성 평가	○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⑤ 사업특화항목	○ 사업별 정책목적·특성에 맞게 사업부처가 제시하는 사업 고유의 정책효과

6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평가 기준	ㅇ 수도권 유형인지 비수도권 유형인지 관련 근거와 함께 기재, 명확하게 수도권 유형인 경우 아래 "② 지역낙후도, ③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작성할 필요 없음 (지역 구분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제3항 참고) ㅇ 사업지 기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이 복합적인 경우 평가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목적, 사업규모・내용(연장, 정거장, 분기점 등), 총사업비(구간별 금액, 재원분담 주체 등)를 수도권・비수도권 유형과 관련 지역으로 나누어 기술
② 지역낙후도	ㅇ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③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ㅇ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시행 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해당사업·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
④ 지역경제 파급효과	ㅇ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 등을 기술

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8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table>
<tr><td>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td><td>
<table>
<tr><td></td><td>수행기간</td><td>사업내용</td><td>B/C</td><td>AHP</td><td>미통과 사유</td></tr>
<tr><td>1차</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차</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td></tr>
<tr><td>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td><td>
<table>
<tr><td></td><td>신청시기</td><td>사업내용</td><td>미선정 사유</td></tr>
<tr><td>1차</td><td></td><td></td><td></td></tr>
<tr><td>2차</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td></tr>
</table>

9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 대상여부	ㅇ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수익형, 임대형 구분

10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별표 2 해당 여부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BTO, BTO 투자위험분담형(위험분담형 또는 손익공유형) 구분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사용료 - 민간투자 추진 시 사용료 수준 ㅇ 건설 보조금 - 민간투자 추진 시 총사업비 중 건설 보조금 비율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사용료 - 민간투자 추진 시 사용료 수준 - 사용료의 인상 방법(예: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최근 3년간 해당사업 부문별 평균 공공요금 인상률 등) ㅇ 건설 보조금 - 민간투자 추진 시 총사업비 중 건설 보조금 비율 ㅇ 위험 분담수준 - 총민간사업비(투자비) 중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수준

1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2. 정보화 분야

① 사업명 : ○○○사업

※ 아래 양식을 준용하여 탄력적으로 작성하되,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1 사업계획(안)

<table>
<tr><td colspan="2">① 사업명
(사업유형)</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② 총사업비
(국고)</td><td colspan="2">○○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td><td>③ 사업기간</td><td>○○년～○○년
(○단계 ○년)</td></tr>
<tr><td rowspan="2">④추진
주체</td><td>주관부처</td><td colspan="4">○○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td></tr>
<tr><td>지자체・
기관</td><td colspan="4">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td></tr>
<tr><td colspan="2">⑤ 사업목적</td><td colspan="4">○ 정성적 목표와 함께 현재대비 목표 연도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간략히 제시</td></tr>
<tr><td colspan="2">⑥ 추진경위</td><td colspan="4">○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회의・내부계획 등
○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기획(연구용역), 수요조사 등 추진절차 및 내용 기재</td></tr>
<tr><td colspan="2">⑦ 사업내용</td><td colspan="4">○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마련에 필요한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내용 제시
<table><tr><td>추진과제</td><td>주요 추진내용</td></tr><tr><td></td><td></td></tr></table></td></tr>
</table>

⑧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⑨ 재원조달방식	○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 재원분담율 : 국고(회계) : 지방비 : 민자 등 - 회계구분 및 재원분담 근거 상세 기술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완공후 연차소요 및 재원분담주체 등)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⑩ 사전용역	○ 조사기관(수행년도) : ○ 용역결과 : 기술성 분석,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⑪ 사업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사업화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시장규모대비 점유율 개선, 대외무역의존도 개선, 수출규모 확대 등 정량적 목표를 현재 대비 제시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시급성	○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상세히 제시 ※ 추진 선결절차 등 제반여건의 성숙여부, 국내외 주요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 문제점 등을 사업추진시기와 연계하여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제시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중장기 계획(로드맵)・법령 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정보화촉진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및 부합성 등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유사・중복성)	○ ※ 동 사업(또는 기술)과 관련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 기술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총사업비(억원)			
기투자액			
사업기간			
사업목적			
세부내용			
기타			

※ 유사 사업 선택은 사업명, 목적, 기술개발대상, 추진방식 및 체계 등이 유사한 사업(타부처 포함)을 자체 선정

※ 세부내용 : 개발목표과제의 세부요소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비교 (세부요소기술과제 비교표 별도 제출)

3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요건 등 기술 ○ 정부 지원 필요성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반영 여부 ○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① **재원계획**

○ 소요예산 산출근거 기술

-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데이터구축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데이터 이행비용, 감리비, 재투자비, 운영기간(5년)간의 재투자비용 및 기타 투자비용 제시
- 연차별 투자계획 제시

(단위 : 억원)

이행과제	2018	2019	2020	합계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14	'15	'16	'17	'18	'19
합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인력투입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박사급(명)											
석사급(명)											
학사급(명)											
합계(명)											

5 정책 효과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되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① 일자리 효과	○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② 생활여건 영향	○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예시) 철도사업의 운행시간 관련 신뢰성 개선 및 열차 운행빈도 개선 효과, 정보화사업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 업무편의성 증가 등
③ 환경성 평가	○ 사업 수행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④ 안전성 평가	○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⑤ 사업특화항목	○ 사업별 정책목적·특성에 맞게 사업부처가 제시하는 사업 고유의 정책효과

6 기술개발 필요성

① 관련분야 연구개발 투자동향	○ ※ 관련 통계 등을 인용한 국내외 정부·민간 투자 동향 및 추이 상세 기술
② 관련분야 기술개발 동향	○ ※ 국내외 관련분야 특허·논문 및 표준화, 기술발전 단계 등
③ 기술개발로 인한 파급효과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산업기술분야 시장전망, 고용효과 등) 등
④ 기타 기술 개발 필요성	○

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 기술
② 지자체 협의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국제규범에의 위배가능성 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재원조달 문제 등을 검토, 대응방안 제시

8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3. 기타 재정부문(복지 및 소득이전 분야)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1 사업계획(안)

<table>
<tr><td colspan="2">① 사업명 (유형)</td><td colspan="3">※ 사업유형 : ○○분야(사회복지, 소득이전 등)</td></tr>
<tr><td colspan="2">② 중기재정지출</td><td>○○억원(융자사업비○○억원)
※ 중기사업계획서상 5년간 재정지출 총액</td><td>③ 사업기간</td><td>○○년～○○년
(○단계 ○년)
또는 지속사업</td></tr>
<tr><td rowspan="2">④ 추 진 주체</td><td>주관부처</td><td colspan="3">○○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td></tr>
<tr><td>지자체 · 기관</td><td colspan="3">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td></tr>
<tr><td colspan="2">⑤ 사업목적</td><td colspan="3">○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 관련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 및 해당 사업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등 기술</td></tr>
<tr><td colspan="2">⑥ 성과지표</td><td colspan="3">○성과지표명:
○측정 산식:
○측정 방법:</td></tr>
<tr><td colspan="2">⑦ 추진경위</td><td colspan="3">○ 추진근거 :
- 관계법령 · 상위계획 · 공약 · 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 · 지자체 · 공기업 · 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td></tr>
<tr><td colspan="2">⑧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td><td colspan="3">○ 시범사업·본사업 관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내용
* 협의신청서 및 협의결과 별도 첨부 필요
<table>
<tr><td></td><td>협의 일자</td><td>검토결과</td><td>복지부 검토의견</td><td>검토의견 반영결과</td></tr>
<tr><td>시범사업 신설</td><td></td><td></td><td></td><td></td></tr>
<tr><td>시범사업 변경</td><td></td><td></td><td></td><td></td></tr>
<tr><td>본사업 변경</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 colspan="2">⑨ 사업규모</td><td colspan="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또는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급여 등의 형태 및 수준 : 현물, 현금, 바우처 등
※ 연도별 지원대상 예상규모 산정내역 등 포함</td></tr>
</table>

<table>
<tr><td>⑩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td><td>○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사업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등을 기술</td></tr>
<tr><td>⑪ 재원조달방식</td><td>○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 재원분담 : 국가 부담분 외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부담분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
○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td></tr>
<tr><td>⑫ 사전용역</td><td>○ 조사기관 :
○ 조사기간 :
○ 용역결과 :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td></tr>
<tr><td>⑬ 시범사업</td><td>○ 수행기간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시범사업 성과평가 : 성과평가 시행여부, 주요 평가내용 등
* 시범사업 성과평가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다년도에 걸쳐 수행된 경우 연도별로 기술
※ 시범사업 내용이 본사업과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점과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table>
<tr><th></th><th>시범사업 (1차)</th><th>시범사업 (2차)</th><th>본사업</th><th>사유</th></tr>
<tr><td>지원대상</td><td></td><td></td><td></td><td></td></tr>
<tr><td>지원요건</td><td></td><td></td><td></td><td></td></tr>
<tr><td>지원율</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시범사업 미수행시 ‘시범사업 미수행’ 명기하고 7 시범사업 수행 곤란 사유 작성</td></tr>
<tr><td>⑭ 사업기대효과</td><td>○
※ 시장실패 교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소득 재분배를 통한 형평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
※ 파급효과(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td></tr>
</table>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table>
<tr><td>① 사업추진의 적시성</td><td>○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종료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td></tr>
<tr><td>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td><td>※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의 반영여부 및 이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기술</td></tr>
<tr><td>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td><td>○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table>
<tr><th>구분</th><th>동 사업</th><th>○○사업
(○○부)</th><th>○○사업
(○○부)</th></tr>
<tr><td>사업목적</td><td></td><td></td><td></td></tr>
<tr><td>추진방법</td><td></td><td></td><td></td></tr>
<tr><td>지원분야</td><td></td><td></td><td></td></tr>
<tr><td>지원대상</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td><td></td><td></td></tr>
</table>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td></tr>
</table>

3 국고지원의 적합성

<table>
<tr><td>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td><td>○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td></tr>
<tr><td>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td><td>○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 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부담의 규모
○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td></tr>
</table>

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table>
<tr><td>① 소요 예산</td><td>○ 소요예산 산출근거
○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table>
<tr><td rowspan="2"></td><td colspan="3">1단계</td><td colspan="3">2단계</td><td colspan="4">3단계</td><td rowspan="2">계</td></tr>
<tr><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tr>
<tr><td>중앙정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방정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사업에 소요되는 중기재정소요액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함</td></tr>
<tr><td>② 소요 인력 등</td><td>※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td></tr>
</table>

5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간부문 협조 시 문제점	○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운영, 관리와 감독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위배가능성, 사각지대의 존재 가능성, 향후 민간부문과의 경합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응방안 제시

6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table>
<tr><td>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td><td>
<table>
<tr><td></td><td>수행기간</td><td>사업내용</td><td>B/C</td><td>AHP</td><td>미통과 사유</td></tr>
<tr><td>1차</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차</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td></tr>
<tr><td>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td><td>
<table>
<tr><td></td><td>신청시기</td><td>사업내용</td><td>미선정 사유</td></tr>
<tr><td>1차</td><td></td><td></td><td></td></tr>
<tr><td>2차</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td></tr>
</table>

7 시범사업 수행 곤란 사유 (시범사업 미수행 사업만 해당)

① 본사업 추진여부 결정의 시급성	○ 시범사업을 먼저 수행한 후 본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객관적 자료를 통해 제시) - 긴급재난 등 갑자기 발생한 사회적 문제 등에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경우 등 제시
② 시범사업 수행 가능성	○ 법·제도적, 윤리적으로 사업 수혜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수혜집단과 비교집단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예시: 안전·재해복구, 출산 등) - 무작위 추출을 통해 구성될 시범사업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등 ○ 시범사업 추진비용이 과다하여 시범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시범사업 수행 시 소요 예상되는 예산규모,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또는 지원금액, 효과성 분석 및 성과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사업 대비 시범사업 비용 비교

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4. 기타 재정부문(복지 및 소득이전 분야 외)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1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분야(교육, 문화, 노동, 환경보호 등)		
② 중기재정지출		○○억원(융자사업비○○억원) ※ 중기사업계획서상 향후 4년간 재정지출 총액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또는 지속사업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⑥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측정 산식: ○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		
⑧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또는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연도별 지원대상 예상규모 산정내역 등 포함		
⑨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사업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등을 기술		

⑩ 재원조달방식	○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 재원분담 : 국가 부담분 외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부담분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 ○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⑪ 사전용역	○ 조사기관 : ○ 조사기간 : ○ 용역결과 :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⑫ 사업기대효과	○ ※ 시장실패 교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소득 재분배를 통한 형평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 ※ 파급효과(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종료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의 반영여부 및 이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기타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3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부담의 규모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중기재정소요액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5 정책 효과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되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① 일자리 효과	ㅇ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② 생활여건 영향	ㅇ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예시) 철도사업의 운행시간 관련 신뢰성 개선 및 열차 운행빈도 개선 효과, 정보화사업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 업무편의성 증가 등
③ 환경성 평가	ㅇ 사업 수행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④ 안전성 평가	ㅇ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⑤ 사업특화항목	ㅇ 사업별 정책목적·특성에 맞게 사업부처가 제시하는 사업 고유의 정책효과

6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간부문 협조 시 문제점	○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운영, 관리와 감독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위배가능성, 사각지대의 존재 가능성, 향후 민간부문과의 경합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응방안 제시

7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붙임자료] 요청자료

(도로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설계속도(km)
4. 횡단구성 - 총폭원(m) 제시 - 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 세부구성 폭원 제시
5. 구조물 계획(교량·터널· IC 형식 등)
6. 노선 종평면도(정확한 시·종점, 교량, IC 위치 등 표시 필요)

7.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 <양식 1>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1>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생산면적(㎡)	준공년도	추진단계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8.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택지개발계획
- <양식 2>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2> 장래 택지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계획인구(인)	반영인구	준공년도	추진단계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9.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 <양식 3>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3>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사업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준공년도	추진단계	비고
						신설/확장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10. 사업과 관련된 국가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
- <양식 4>을 참고하여 작성 (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

<양식 4>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철도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열차운행계획(사업노선, 주변 연계선구)

4. 차량시스템

5. 구조물 계획(교량・터널 연장 및 형식)

6. 노선 종평면도(정확한 시・종점, 교량, 터널 위치 표시 필요)

7. 정거장, 차량기지 위치 및 규모(면적)

8.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 <양식 1>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1>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생산면적(㎡)	준공년도	추진단계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9.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택지개발계획
- <양식 2>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2> 장래 택지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계획인구(인)	반영인구	준공년도	추진단계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10.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 <양식 3>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3>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사업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준공년도	추진단계	비고
						신설/확장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11. 사업과 관련된 국가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

- <양식 4>을 참고하여 작성(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

<양식 4>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항만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평면 배치계획 및 각 구조물별 표준단면도 등 관련 도면
4. 어업보상비 산출 규모 및 산출 근거(어업보상이 필요한 경우)
5. 상부시설 규모 및 비용 산출 근거(구체적인 상부시설 계획이 있는 경우)
6. 하역장비비 및 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구체적인 상부시설 계획이 있는 경우)
7. 준설토 투기계획(투기장 현황 및 투기 계획 자료)
8. 수요 추정을 위한 물동량, 여객수 관련 자료(화물부두, 여객부두의 경우) - 최근 5~6년간 항별 입출항 척수 및 부두별·품목별 물동량, 부두별 여객수 실적 자료 - 물동량 및 여객 수요 예측자료 - 항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품목별 항만물동량 예측」자료(최신자료 포함)
9. 사업과 관련된 국가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 - <양식 1>을 참고하여 작성(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 <양식 1>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 고시시점 | 기관 0000년 00월

[공항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접근교통망 세부 계획
- 도로 : 구조물 계획(교량・ IC 형식), 총폭원, 설계속도, 노선 종평면도(시・종점, 교량, IC 위치 표시 필요) 등
- 철도 : 열차운행계획(사업노선, 주변 연계선구), 차량시스템, 구조물 계획(교량・터널 연장 및 형식), 노선 종평면도(정확한 시・종점, 교량, 터널 위치 표시 필요), 정거장, 차량기지 위치 및 규모(면적) 등

4. 기존 공항의 운항 일지 Tower-log 자료
- <양식 1>을 참고하여 작성

<양식 1> 운항 일지 Tower-log 자료 양식

A속성	B속성	C속성	D속성	E속성	…
⋮	⋮	⋮	⋮	⋮	⋮

- A속성, B속성 ~ : 날짜, 실시각, 예정시각, 출발/도착, 항공사, 편명, 등록번호, 기종, 목적지, 여객/화물, 공급좌석 수, 국내/국제, 항공화물량, 탑승객 등
- 속성별 기호명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 항공사명: KAL, AAR. 목적지명: HKG, HND 등)

5. 기존 공항 및 신공항의 상세 시설현황 및 시설계획
- 체크인 카운터 개수 및 처리시간
- 도착 수하물 수취대수 및 처리시간
- 수하물 탁송 등 항공기 출발 관련 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시간
- 검역 등 항공기 도착 관련 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시간

6. 기존 공항의 운영현황 자료
- 시설규모(Air side 및 land side 별 주요시설 규모, 연면적, 수용능력 등)
- 부서(또는 부문)별 총인원, 직급별 인원(기능직 별도구분 요망)
- 직급별(또는 기능직) 평균인건비(기본급+상여+수당 등 포함) 및 퇴직급 규정
- 비정규직(계약직 등)의 경우 별도로 총인원 및 평균인건비
- 기타 업무(보안, 환경 등) 수행으로 발생하는 외주비(외주업무 내용과 해당외주비 구분제시 요망)
- 운영비를 결정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규가 있는 경우 해당 관련법규
- 공항별 상주기관, 임대업체, 협력업체 등의 인원 현황
- 항공운송사업자 지상업무(체크인 카운터) 인원 현황 및 검역기관 등 공항업무협력기관의 인원 현황 자료
- 항공운송사업자 지상업무(체크인 카운터 인력 등)의 인건비
- 기타 공항업무협력기관의 인건비

7. 기존 공항의 연도별 항공운임요금 자료

8. (국제선 공항의 경우)최근 5개년간 출입국 세부자료
- 공항별 출발지 및 목적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9. 장애물 검토 자료
- 적용된 장애물표면기준
- 장애물 종평면도

10. 소음피해 및 소음보상비 추정 관련 자료
- 방향별 소음등고선도(WECPNL, 첨두시교통량 등 INM 입력자료)
- 소음보상비 산출 근거

11.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 <양식 2>를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 또는 실시계획 승인계획 시점을 명시
-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요청 자료

<양식 2>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생산면적(㎡)	준공년도	추진단계

12.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택지개발계획
- <양식 3>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 또는 실시계획 승인계획 시점을 명시
-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3> 장래 택지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계획인구(인)	반영인구	준공년도	추진단계

13.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 <양식 4>를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 또는 실시계획 승인계획 시점을 명시
-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4>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사업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준공년도	추진단계	비고
						신설/확장

14. 사업과 관련된 국가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

- <양식 5>를 참고하여 작성(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

<양식 5>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수자원부문 사업]

[공]: 공통, [댐]: 댐관련 사업, [하]: 하천관련 사업, [수]: 수도관련 사업[환경부문 해당사업은 환경부문 목록 참고]

요청 자료

1. (공) 총사업비 기준연도

2. (공)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공종별 수량 산출 및 사업비 산정 내역서(EBS 파일, 엑셀파일)
   - 공종별 수량 산출 및 단가 적용 근거
   - 용지보상비 등 보상비 산정 근거

3. (수) 운영비 산정 시 적용 근거자료
   -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용수구입비, 유지수선비, 일반관리비 등 운영비 항목별 산정 시 적용 근거 자료

4. 각종 도면자료
   - (공) 공종별 수량 산출 및 기술적 분석을 위한 각종 도면(CAD 파일)

5. (공)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지자체 계획
   - <양식 3>을 참고하여 작성 (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

상위계획(예):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예): 권역별 급수체계 구축 기본 계획, ○○댐 기본계획 보고서 등
지자체 계획(예): ○○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양식 3>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6. (공) 민원 발생 현황
   - 해당 시설에 대한 민원 발생 현황 자료(건수, 민원 내용 등)

7. 기타 도면자료
   - (수) 관로노선 연장 및 표고 확인 가능한 수치지형도 및 지적도(국도, 하천, 철도 등 추진구간 포함)

8. 각종 분석 자료
   - (댐)(하) 시설물 규모/형식 결정 관련자료(엑셀파일): PMP, PMF, 홍수조절용량,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등 각종 수리/수문 자료
   - (댐)(하) 침수구역도(무해빈도 이후 목표빈도까지) 및 침수구역 산정 방법에 관한 자료(홍수위 산정을 위한 HEC-RAS 파일 및 침수구역에 대한 SHAPE 파일)
   - (수) 관망해석 파일

9. (댐)(수) 최근 5년간 인구 추정 관련 자료(조성법 적용을 위한 자료 1식)
   - 성별, 연령별, 주소(읍, 면, 동), 전입지, 전입일, 전출지, 전출일, 사망일, 출산일, 외국인여부 등
   - 최근 10년간 관광인구(내/외국인 모두) 및 세부 산출 근거

10. (댐)(수)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계획
   - <양식 1> 및 < 양식 2>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 또는 실시계획 승인계획 시점을 명시
-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1>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생산면적(㎡)	준공년도	추진단계

<양식 2> 장래 택지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계획인구(인)	반영인구	준공년도	추진단계

[건축 사업]

※ 본 내용은 건축을 수반하는 사업의 일반적인 건축비용 추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이와 함께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요청 자료

1. 사업규모 세부근거
 - 확정된 사업예정부지의 지번, 지번별 소유주(국유지, 공유지, 사유지)・용도지역・이용상황
 - 부지면적, 건축면적 / 대지 법적 요건(용적률, 건폐율 등)
 - 연면적에 포함된 공간별 면적표와 필요면적을 산출한 근거
 -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장비별 구체적인 사양 등

<예시> 건축물 공간별 세부내역

구분	시설용도	세부시설명	면적(m^2)	면적기준	기준근거
본관	전시체험	oooo실	ooo	oom^2/인, oo명	
		oooo실	ooo	oom^2/인, oo명	
	수장시설	수장고	ooo		
	편의시설	공용공간	ooo		
		식당	ooo		
	소계		ooo		

<예시> 건축물 외 세부내역

구분		산출근거				기준근거 (위치, 산출근거 등)
		단위	면적	규모	단가	
주차장	실외	oom^2/대	ㅇㅇm^2	ㅇㅇ대	oo/m^2	
	실내					지하o층, 지상o층, 별도주차건물, 진입램프 포함
	소계					
운영 시스템	장비구입					
	프로그램구입 등					

2. 총사업비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장치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장치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유사 시설, 유사 프로그램과의 역할분담 계획(사업 기획, 사전용역 등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추진되는 사업, 프로그램, 시설의 비용・수요・편익과 관련된 유사시설 혹은 사업의 기존자료는 사업의 경제성평가에 활용되며 재무성분석이 시행될 경우 겸용하여 활용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가 충분할수록 적절한 평가가 가능함.

<예시> 유사 사업과의 비교

	해당 사업	타사업(시설)A	타사업(시설)B
지역			
기능			
규모			
기능			
운영방식			

4. 운영 계획 세부근거
ㅇ운영비의 세부항목별 총액이 아닌, 원단위가 적용되는 수준의 산출근거를 제시
ㅇ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운영인원 및 인원별 인건비 단가 등을 제시
ㅇ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본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대체투자비,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을 포함(산출근거와 함께 제시)

[문화・관광부문 사업]

※ 본 자료는 문화 관광부문 특성이 고려된 추가사항만 제시함.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는 건축사업 요구자료를 참고.

요청 자료

1. 해당 사업의 정의와 성격 규정
 - 문화시설의 경우「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 분류
 - 관광시설의 경우「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지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기타문화시설 등	-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체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

 - 과학관의 경우『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
 - 그 외 규정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 별도 규정법령 제시
 - 국내외 유사시설에 대한 자료 제시(건립시기,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건립주체, 주요 시설, 운영 프로그램, 최근 5년간 관람객, 입장요금, 건립비용, 운영비용 등)

2. 프로그램 운영계획
 -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 제시
 - 프로그램은 건축물 실별 세부내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
 - 유사 프로그램의 개요, 이용실적,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요금, 인력 및 사업비 등 소요비용 제시
 - 공연시설의 경우 예상 공연유형 및 개최횟수, 공연수준 등을 제시

3. 건축부문 외 총사업비 세부근거
 - 박물관 등 전시공간이 포함될 경우 유물구입 수량과 비용 등을 제시
 - 전시공사가 별도로 필요할 경우 전시 수준, 공사비, 산정기준 제시
 - 체험시설 도입이 필요할 경우 시설유형, 산정근거와 비용, 대수선 주기 등을 제시

4. 그림 및 사진자료
 - 공사비 수준이 감안된 조감도 제시
 - 각 시설별 면적이 고려된 평면도 제시
 - 세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 그림 및 사진 자료 제시
 - 전국, 광역지자체, 사업예정지에 대한 위치도
 - 유사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진 자료

5. 운영비 세부근거
 - 운영비용과 세부근거는 다음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
 - 운영 및 행정인력에 대한 예상인원, 직급 등을 제시
 - 기존 유사 운영시설이 있을 경우, 최근 3~5년간 운영 및 결산자료 제출

유형화 결과		제안항목
항목	내용	
인건비	소요인력의 인건비	소요인력 비례성 운영비
인건비성 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시설관리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집기비품비 등	시설면적 비례성 운영비
위탁용역비	관리, 청소 등 위탁용역 소요비용	
시설별 특수비용	전시품구입비, 장서구입비 등	

6. 기타사항
 - 향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 및 방식 제시
 - 해당사업과 대체관계, 유사관계 시설에 대한 개요 및 현황 제시
 - 유물, 특수한 전시, 체험시설이 필요한 경우 수급계획 제시
 - 별도의 공간계획이 필요한 유물, 전시물이 있을 경우 추가 제시
 - 유료, 무료시설 구분, 입장료, 관람료 등 이용요금 계획 제시

[의료부문 사업]

※ 본 자료는 의료부문 특성이 고려된 추가사항만 제시함.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는 건축 사업 요구자료를 참고.

요청 자료
1.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세부근거 - 병상규모, 병상구분, 특수시설, 공용면적 비율(G/N 비) 등 - 기타투자비(의료장비비, 집기비품비, 전산장비비, 개원전 운영비 등)의 수량 및 비용산정 근거 * 특히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의 경우 구입의 필요성, 구체적인 사양, 견적금액 등 제시 필요
2. 수요 및 편익 추정을 위한 자료 - 최근 5년간 해당(유사) 의료시설의 중점관리질환별 입원(실인원/연인원), 외래, 응급환자, 의료급여환자 등의 인원 * 응급환자의 응급진료결과(귀가, 전원, 입원, 사망, 기타사망 등으로 구분)를 시군구로 구분하여 별도로 제시 - 최근 5년간 진료권의 중점관리질환별(가능시) 입원, 외래, 응급환자, 의료급여환자 등의 지역친화도와 지역환자 구성비에 대한 세부자료(대/중/소 진료권 구분) - 진료권의 행정구역별 인구수, 인구특성(성별, 연령, 장애인, 의료급여 종별, 건강보험별),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변화 가능성 - 진료권의 행정구역별 의료시설 현황(의사수, 병상수, 전문분야, 진료실적, 진료과목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응급환자사망률 등), 의료단계별 입원환자 비중, 환자 1인당 동반자 비중 * 유사한 신규 의료시설이 최근 있을 경우 전환환자 수 - 진료과목별 외래환자 평균 대기시간/진료시간 자료 - 동일한 진료권 내에서 경쟁 의료시설 등과 해당 의료시설까지의 교통시간 거리 - 미충족 의료수요의 신규발굴 가능성 및 근거 - 병원의 특화분야(의료취약계층, 장기요양, 감염병 관리, 연구 등)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인력채용, 병상수급, 예산 등) 자료
3. 공공의료 관련 정부정책 및 예산 현황 자료
4. 정책성 평가를 위한 자료 - 예: 주민의 건강한 삶, 감염병 대응, 질병예방 효과 등

[정보화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구축기간과 운영기간 구분하여 제시)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모든 자료는 엑셀파일도 기본으로 제출
- 구축이후 운영기간 5년간의 운영유지비, 재투자비 등 기타비용 제출
- 소프트웨어 공종별 FP(Function Point)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출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비 내역서(견적서 최소3개 이상) 제출
- 하드웨어는 구입 등 소요되는 하드웨어 리스트가 제시하고, 각 하드웨어의 사용처(기능)을 제시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상세 근거 제시(MM(man month) 등)

<표> 총사업비 추정 결과 양식(예)

(단위: 백만원)

분류	사업계획안
A. 시스템 구축시	
A-1. ISP 비용	
A-2. 하드웨어 비용	
A-3.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A-4. 소프트웨어 구축비	
A-5.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A-6. 기존 시스템 이전 비용	
A-7. 교육 및 홍보비용	
A-8. 발주기관 사업 관리비	
A-9. 부가가치세	
B. 부대비	
B-1. 발주기관 사업 관리비	
B-2. 감리비	
B-3 부가가치세	
C. 예비비	
D. 운영유지비(5년간)	
F. 총사업비	

주: 표에 제시되지 않은 비용이 있는 경우 상세 근거와 함께 제시

3. 만약 건물(센터 등) 구축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부문 사업의 요청자료도 모두 제출

4. 기술성 분석측면에서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판)」에 제시된 업무요구부합성, 적용기술적합성, 구현운영계획적정성에 대한 부처 의견 제시

5. 정보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시스템 구축의 범위, 정보시스템 활용계획 등 해당 사업에 대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제출
- 현재 시스템 현황(AS-IS)와 대상 사업의 미래모습(TO-BE)에 대한 상세 자료 제출
  : 업무 프로세스관점에서 현재 문제점과 사업추진에 의한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상세하게 제시
- 전면 재개편 사업의 경우 단순한 기능 추가는 물론 사업에서 목적으로 하는 현재 시스템과 업무처리 방식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세하게 제출

6. 기술적 관점에서의 as-is/to-be 모습도 제시

7. 운영 계획 세부근거
- 운영비의 세부항목별 총액이 아닌, 원단위가 적용되는 수준의 산출근거를 제시
- 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운영인원 및 인원별 인건비 단가 등을 제시
- 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임대료, 본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재투자비 등을 포함

8. 기관연계 및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의 사업은 관련 현황 자료 제시
- 연계 사업의 경우 관련기관 협의 정도, 법률 개정, 사업추진 선결 절차 등 제시
-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 계획등이 있는 경우 제시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검토의견 자료 제시

[환경부문 사업]

※ 환경부문 사업: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음식물류 포함)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을 포함함.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운영비 산정시 적용 근거자료(단가자료, 견적서(약품단가 포함), 법적 근거자료, 인건비 등)
3. 관련 상위계획 및 본 사업관련 용역 수행 보고서 - (필요시) 전산자료 제출
4. 사업계획 관련 위치도
5. 원인자부담금 산정 근거 및 개발계획 리스트
6. 최근 5년간 인구 추정 관련 자료 - 성별, 연령별, 주소(읍,면,동), 전입지, 전입일, 전출지, 전출일, 사망일, 출산일, 외국인여부 등 - 최근 10년간 관광인구(내/외국인 모두) 및 세부 산출 근거
7. 장래 개발계획 현황 - 현재 추진 중인 장래 개발계획 중 현 시점에서의 추진 단계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대한 사업에 대해 준공연도, 개발계획 규모(면적, 인구, 가구수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개발계획에 대한 외부유입률 자료 제출
8. 용지보상비 산정 관련 - 확정된 사업예정부지의 지번, 지번별 소유주(국유지, 공유지, 사유지)・용도지역・이용상황 - 본 시설의 점용면적을 시설별(처리시설, 관로 등)로 구분하여 제출
9. 민원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해당 시설에 대한 민원 발생 현황(건수, 민원 내용 등)에 대한 자료
10. (해당 사업) 최근 운영 현황 - 사업계획 관련 운영현황(일별 운영자료) - 최근 10년간 처리 현황 및 처리시설별 반입량, 처리량(하수처리, 매립, 소각, 재활용 등) - 최근 5년간 처리시설별 가동일수 현황
11. (해당 사업) 대수선비 포함 사업의 경우, 준공연도별 공사비를 양식에 맞춰 작성 - 공종별 공사비 미확보시 전체 공사비로 제시 - 준공 공사비 제시가 어려운 경우, 설계 내역서 제시

구분(ex)	준공년도	준공 공사비(백만원)		준공 낙찰률
1처리장	0000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조경		
		계		
2처리장				
....				
....				
합 계				

[기타재정(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과 산출 세부근거 - (4개년도 중기재정지출 기준) 항목별 비용 내역과 산출 근거 - 서비스 적용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 및 기준 - 항목별 총액이 아닌 세부 단가가 적용되는 수준의 산출근거를 제시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3. 사업 규모 산출 세부근거 - 사업대상, 수요, 지원 요건, 지원율, 수혜율 등에 대한 세부 근거 자료(raw data 포함)
4. 사업계획 관련 사전검토 자료 - 사전용역, 연구자료, 조사자료, 유사사업 추진 사례 등
5. (시범사업 기 추진 시) 시범사업 수행 내역 - 시범사업 수행 지침, 성과 검토, 만족도 조사자료 등
6. 사업 관련 분야의 현황 및 추이 자료 - 현황자료(DB자료 포함), 실태조사, 동향조사 자료 - 사업 수요/공급 관련 연도별(시계열, 패널) 각 자료 - 활용 가능 DB 리스트(고용보험 DB, 재정패널 등) 및 자체 DB 자료
7. 사업 추진의 정량적, 정성적 효과 검토 관련 자료
8. 운영 계획 - 사업의 운영 체계 구조화 자료 - 사업의 전달 체계 관련 세부자료 - 사업 추진 주체별(공공-민간/중앙-지방) 역할 분담 계획 - 운영 인건비 및 경비로 소요되는 비용과 세부 산출 근거 - (기존 운영 중인 시설 또는 인력을 활용할 경우) 운영 실태 자료 - (사업 내 프로그램이 존재할 경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9. 본 사업 관련 계획 또는 정책방향 - 본 사업 관련 국가 상위계획 및 지자체 차원의 계획 - 본 사업 관련 정책방향
10. 재원조달의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자료 -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 재원 분담 주체별 본 사업 관련 분야 예산 - (지방비 매칭이 있을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 내역 - 최근 5년간 본 사업 관련 부문 예·결산 내역과 향후 예산 배분 계획
11. 기존 유사 정책과의 조합 - 중앙 또는 지자체 차원의 유사 사업 현황 - 기존 유사 사업과의 관계 및 유사 중복가능성 - 각 사업 간 정책조합(policy mix) 계획

[별표 2]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민간투자기본계획 §64 ①항)

1. 기본 유형

분 야	시 설
도로	유료 도로, 유료 터널, 유료 교량, 노외주차장, 제1종 시설물 교량·터널 신설 유형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철도	철도, 도시철도, 철도시설
항만 · 공항	항만시설, 공항시설
수자원	수도 및 중수도
환경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SOC 등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생활(전문) 체육시설

2. 그 밖의 민간투자 검토 대상 유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투자비 회수 등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기타 시설